- (3)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또는 냉동창고 내부에는 가스농도측정를 측정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25 % 이상인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통풍·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가스농도측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
 - (나) 인화성물질의 증기, 가연성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
 - (다) 인화성물질의 증기,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을 때
 - (라)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
- (4)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를 작업 전과 작업 중 매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폭발하한계 값의 10%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.
- (5) 화기작업 중 휴식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용농도 이하임을 확인하여야한다.
- (6)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- (가) 해당 작업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,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은 화기작업 영향구역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
- (다) 작업 중 용접불티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 는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밀폐공간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,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- (7)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앵커작업, 우레탄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설치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안전대,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